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

대상기간: 2015. 1. 1. ~ 2018. 현재

연번	감사명	감사기간	기관명	쪽수
1	2015년도 사립유치원 경영 실태 특정감사	2015.7.6. ~ 2015.7.30.	12개 사립유치원	1~23
2	2016년도 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	2016.10.13. ~ 2016.11.21.	6개 공사립유치원(공립1, 사립법인1, 사립개인4)	24~35

사립유치원 자원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2015.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사립유치원 경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개요

가. 감사목적

- 누리과정 지원 확대로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¹⁾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나. 조사대상 : 12개 사립유치원

다. 조사기간

- 본 조사 : 2015.7.06. ~ 2015.08.26.(감사단장 ○○○ 외 6명)
- 보완조사 : 2015.9.10. ~ 2015.12.28.(감사단장 ○○○ 외 2명)

2.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1] 이루니유치원		
1. 차량구입을 위한 적립금 운영	○ 2014. 3월부터 2015. 6월까지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매월 2백만원씩 총 3천 2백만 원을 적립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주의 - 원장 ○○○ ○보전 - 32,013,258원

1) [유치원 현황]

시도	유치원수			학 급 수			원 아 수			교원수	비고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서울	197	690	887	710	3,565	4,275	15,107	76,287	91,394	6,903	

[사립유치원예산 직접 지원 현황](2014년 기준, 269,331,389천원)

- 장애학생 지원 945,935천원
- 누리과정 지원 229,854,872천원
- 사립유치원 지원-인건비성 31,812,132천원, 비인건비성 1,273,800천원
 - * 2015년 학생1인당 지원액 매월290,000원(교육과정비 220,000원, 방과후과정비 70,000원)
 - * 이와 별도로 유치원 자체적으로 수업료와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 유아교육지원 50,000천원
- 유치원방과후지원 5,394,650천원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 직원 퇴직급여제도 운영 소홀	○ 2012년 개원 이래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았고, 2014. 5. 21.부터 현재까지 퇴직금 적립 용도로 금 35,250,000원(이자15,667원 별도)을 일반예금으로 적립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5조	○시정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 관련 합계표 미제출	○ 2014학년도 9월부터 2015학년도 5월까지 일반과세 업자로부터 대가 지급 시 20건, 81,783,9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	【국세청】 ○통보 - 세금계산서 미징구 내역 등을 과세업무에 활용
4. 회계 관련 증빙서류 보존·관리 부적정	○ 2012학년도 지출증빙서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및 장부 일체를 보존·관리하고 있지 않음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3조 및 제53조의2	○경고 - 원장 ○○○
[2] 송파유정유치원		
1. 교육과정 및 특성화 활동 운영 부적정	- 교육활동 관련 유치원운영위원회 부실 운영 2014학년도에 교육과정 및 특성화 활동 운영 시간, 횟수, 비용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지 않음 -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내 특성화활동 실시 특성화활동은 방과후과정시간에서만 실시하여야 하나 2014학년도 만4세반 교육과정을 1일 5시간(9:00~14:00)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3시 30분부터 14시 10분까지 특성화 활동 실시 - 특성화활동 업무 처리 부적정 ①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및 활동안을 미작성하였고, ② 강사 근무상황, 아동 출결 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으며, ③ 2014학년도에 채용된 강사 13명의 계약서 작성 시 횟수, 비용을 명시하지 않음	○시정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3조,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2. 세입세출예산 예산편성 소홀 (공적이용료 부당편성)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운영비 과목 중 공통운영비목에 설립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공적이용료 176,196,000원(14,683,000원×12월)을 편성함(지출액은 없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 시정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 관련 합계표 미제출	○ 2014. 3. 1.부터 2015. 5월말까지 거래업체로부터 20건의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음(총 20건의 공급가액 316,739,609원, 부가세액 31,673,963원, 계 348,413,572원)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32조	【국세청】 ○통보 - 세금계산서 미징구 내역 등을 과세업무에 활용
4.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	○ 지출결의 없이 ○○보육사로부터 수입교재교구 마을그림카펫 외 49종 구입 명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2015. 2. 23. 116,500,000원, 2015. 2. 27.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동 업체 대표에게 지급한 후, 동 업체가 본사 수입 물량 한정으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자 각각 2015. 6. 29.과 2015. 3. 24.에 이를 반납받아 유치원회계에 다시 입금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 경고 - 설립자 ○○○ - 원장 ○○○ (퇴직불문)
5. 주차장 사용료 지출 부적정	○ 2014. 2. 20. 유치원 통학차량 등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차장 801.6㎡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인 설립자 ○○○이 세무서에 주차장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지출하였음.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2014년 3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 13개월분, 금13,000,000원임 (2015.12.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 경고 - 설립자 ○○○ - 원장 ○○○ (퇴직불문)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6. 회계 관련 증빙 서류 보존·관리 부적정	○ 2012~2013회계 연도의 지출증빙서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및 장부 일체를 보존·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또한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2012~2015회계연도 식단표, 검식일지, 배식일지, 구매식품의 검수일지,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일지, 폐식용유 위탁 처리 계약 관련 서류도 작성·보존·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3조 및 제53조의2	○ 경고 - 원장 ○○○ (퇴직불문) - 원장 ○○○
7. 계약 업무 소홀	○ ‘강화도어 시공 및 방풍실 시공’의 5건을 계약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데도 견적서를 1인에게만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문구류 구입 2건과 교재교구 구입 2건을 같은 날 계약하면서 총 금액이 추정 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각각의 건으로 분할한 후 견적서를 1인에게만 받아 수의계약을 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1 및 제30조	○ 기관경고
8. 통학차량 구매업무 부적정	○ 설립자는 차량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현행 법규 강화로 차량성능 개선에 따른 차량공급 부족에 따라 우선적으로 납품을 받겠다는 이유로 유치원회계에서 2회(2014. 12. 2. 2015. 2. 21.)에 걸쳐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비로 각각 금53,150,000원을 집행함. (2015년 11월 인도받음)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 경고 - 설립자 ○○○ - 원장 ○○○ (퇴직불문)
[3] 월드유치원		
1. 세입·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공적이용료 부당 편성)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운영비 과목 중 공통운영비목에 설립자 소유 유치원건물의 감가상각비, 재건축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적이용료 154,254,000원(12,854,471원×12월)을 임의 편성함(지출금액은 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 시정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장기적립식 만기환급형보험 가입 및 지출	○ 설립자 개인명의로 '무배당 ○○○○재산종합보험'에 3년(2013.4.5.~2016.4.5.) 납입으로 가입 한 후, 2015.5.30 현재 유치원회계에서 매월 5,431,704원 씩 총135,792,600원을 적립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및 「사립학교 예산 및 결산 지침」	○ 경고 - 설립자 ○○○ - 원장 ○○○ ○ 보전 -135,792,600원
3. 회계 관련 증빙서류 보존·관리 부적정	○ ○○유치원에서는 2012학년도 지출증빙서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및 장부 일체를 작성·보존·관리하고 있지 않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 및 제53조의2	○ 경고 - 원장 ○○○
4. 유치원회계 공금 횡령	○ 공과금 명목 공금 횡령 2013. 12월부터 2014. 8월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공과금 명목으로 본인의 개인차량 자동차세, 자택 관리비, 자택 가스요금과 배우자이자 설립자 개인차량 자동차세 등 9건, 3,415,330원을 지출(납부)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 ○ 강사비 명목 횡령 2014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치원회계에서 강사 2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5건, 총 16,844,520원을 정당한 채주가 아닌 본인 개인 계좌와 배우자이자 설립자 개인계좌로 이체·처리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 ○ 교원 상여금 횡령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에 교원들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배우자이자 위 유치원 설립자의 개인계좌로 총70,045,844원(2013.2. 26. 교원 20명, 54,416,138원, 2014.2.28. 교원 6명, 15,629,706원)을 이체·처리(이중 확인된 것만 5명), 총 11,872,170원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함 ○ 사학연금 및 의료보험 개인부담금, 갑근세 횡령 2014학년도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본인·배우자이자 유치원 설립자·자녀이자 유치원 사무직원 에 대하여 사학연금 및 의료보험 개인부담금,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유치원회계에서 납부	○ 중징계요구 - 원장 ○○○ ○ 보전 - 50,000,560원 【사법기관】 ○ 고발 -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하계 하는 방법으로 17,429,600원을 횡령함. 자녀이 자 위 유치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과다 지급하는 방 법으로 횡령한 금액은 438,940원임 「형법」 제356조</p>	
<p>5. 직원 퇴직급여제도 미 설정 및 퇴직금 미 지급</p>	<p>○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 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중 하나를 설정하여 운용하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도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11조 및 제25조</p>	<p>○ 주의 - 원장 ○○○ ○ 시정</p>
<p>6.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 관련 합계표 미제출</p>	<p>○ 2013.3.1.부터 2015. 5월말까지 거래업체에 대가 지 급 시 교재인쇄비 등 26건(총 82,414,31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하였 으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에 대해서도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p>	<p>【국세청】 ○통보 - 세금계산서 미징구 내역 등을 과세업 무에 활용</p>
<p>7. 유치원회계에서 차입금 운영 부적정</p>	<p>○ 2013학년도 유치원회계를 운영하면서 총 6회에 걸 쳐 차입금(이사장 주장, 인건비 및 운영비 용도) 명 목으로 299,050,000원을 입금한 후 총 6회에 걸쳐 차입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248,960,866원을 출금 처리하고 차액 50,089,134원을 2013학년도 유치원회 계 결산시 설립자 전입금으로 처리함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p>	<p>○ 기관경고</p>
[4] 문성유치원		
<p>1. 유치원 교육과정 내에서 바깥놀이 시간 미 확보</p>	<p>○ 2015학년도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시간에 바깥놀 이 시간을 60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14-5호, 2014.2.28.] 및 2015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p>	<p>○ 시정</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 2013. 3. 29.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2015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8차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을 거치지 않음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 시정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2012~2013회계연도 예산에서 ○○일보 후원금 등 14건, 금2,657,370원의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제4조 및 제21조	○ 경고 - 원장 ○○○ ○ 보전 - 2,657,370원
4. 회계 증빙서류 보존·관리 부적정	○ 2013학년도 4월부터 2015학년도 6월까지 연구교사의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강의원고, 강의일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영수증) 등을 보존·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2012~2014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와 관련하여 지출증빙서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및 장부 일체도 보존·관리하고 있지 않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및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 경고 - 원장 ○○○
5. 유치원회계 공금 횡령	○ 개인승용차 렌트비를 ‘승용차 사용료’ 명목 횡령 개인승용차 에쿠스(EQUUS) 렌트비용을 2012. 12. 5.부터 2015. 6. 5.까지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총 31회[제13회차~제43회차]에 걸쳐 금41,520,872원을 렌트카 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 ○ ‘승용차 유지비’ 명목으로 공금 횡령 2012~2013회계연도 기간 동안 에쿠스(EQUUS) 운행에 따른 주유비 등 개인적으로 처리한 영수증을 ‘승용차 유지비’ 명목으로 지출하여 총8회에 걸쳐 금7,108,000원을 자기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 ○ ‘과태료 납부’ 명목으로 공금 횡령 2015. 4. 23. 위 개인승용차 에쿠스(EQUUS) 과태료 1건, 금32,000원 지출, 공금을 사적 사용 ○ 기부금 명목으로 공금 횡령	○ 중징계요구 - 원장 ○○○ ○ 보전 - 49,660,872원 【사법기관】 ○ 고발 -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12. 12. 4. 지출결의서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결의한 후, 금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 횡령한 당일 금1,000,000을 자신의 이름으로 “○○○ 후원회”에 전액 송금	
6. 직원 퇴직급여제도 미 설정	○ 2012년부터 2015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학연금에 가입된 교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4명에 대하여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25조	○ 시정
7.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 2013년도에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2건을 집행하면서 공사 내용에 맞는 전문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가 아니거나 면허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기관경고 【사법기관】 ○ 고발 - 무면허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
8. 시설계약 업무 소홀	○ ‘소방 설비 공사’ 외 2건의 시설공사를 계약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데도 견적서를 1인에게만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기관경고
[5] 무지개영재유치원		
1. 관할청(○○ 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미이행	○ 2014. 8월 ○○○소방서의 소방시설안전점검 실시 결과 지적된 사항(옥탑1층 무단 증축 부적정)에 대하여 2014. 8. 26.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 운영 관련 시정요구(행정지원과-9253)를 받았음에도, 2015. 7. 16. 감사일 현재까지 옥탑을 폐쇄하지 않고 조리실로 사용하는 등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주의 - 원장 ○○○ - 설립자 ○○○
2. 세입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공적이용료)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사유재산공적이용료 과목 중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비목에 설립자 소유 유치원건물의 감가상각비, 재건축비용 등의 용	○ 시정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부당 편성)	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유재산공적이용료 30,000,000원을 임의 편성함.(지출액은 없음) 「사립학교법」 제33조와 제51조(준용규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 관련 합계표 미제출	○ 2014. 3. 1.부터 2015. 5월말까지 거래업체에 대가 지급 시 원내 보수공사 등 50건(총 245,313,26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53조	【국세청】 ○통보 - 세금계산서 미징구 내역 등을 과세업무에 활용
[6] 아란유치원		
1.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에 바깥놀이 시간 기준 미달	○ 2015학년도 교육과정(누리과정)에 바깥놀이 시간을 만3세반은 30분(11:00~11:30), 만4세반은 50분(10:50~11:40), 만5세반은 30분(11:30~12:00) 운영함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교육청 고시 제2014-5호, 2014.2.28.], 「2015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2015. 3.)	○ 시정
2. 회계 등 증빙서류 보존·관리 부적정	○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의 지출결의서를 작성·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청구서와 견적서,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입증하는 무통장 입금증 및 공사관련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전문면허증·납세증명서·설계서·견적서 등)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대부분을 보존·관리하지 않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제53조 및 제53조의2	○ 경고 - 원장 ○○○
3. 예산의 목적 외 집행	○ 2015. 4. 2.과 2015. 4. 30. 유치원회계 학부모부담수입(항 수익자부담경비, 목 교재교구비)에서 ‘교사연수경비’로 명목으로 ○○홈쇼핑에서 ‘○○○○ ○○○ 사파리 자켓’ 4세트를 구입하고 대금 금 392,000원을 집행함.	○ 경고 - 설립자 ○○○ - 원장 ○○○ ○ 시정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 유치원 2층 일부를 축소하여 운영되고 있는 ○○어학학원의 공공요금[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체계를 별도로 분리하지 아니하여 ○○유치원회계에서 공공요금 집행시 일괄로 집행함</p> <p>「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p>	<p>○ 보전 - 392,000원</p>
<p>4. 공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시설공사 발주</p>	<p>○ 2013년도 부터 2015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4건을 집행하면서 공사 내용에 맞는 전문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면허가 없는 건축사 ○○○를 선정하여 공사를 집행함. 또한 공사는 별도 서면 계약 또는 견적서 제출 없이 공사를 실시하고 대가 청구 시 지인이 대표로 있는 (주)○○○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하여 동 업체 명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위 유치원에서는 이것만을 근거로 대가를 지급함</p> <p>「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제8조,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국토해양부 예규 제241호, 2012.7.5 시행>」</p>	<p>○ 기관경고</p> <p>【사법기관】</p> <p>○ 고발 - 무면허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p>
<p>5. 영양사 미채용·급식관련 필수 서류 미비 등 급식 운영 부적절</p>	<p>○ 원아수가 총191명임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음. 영양사와의 ‘위탁계약서’ 제2조에 ‘갑과 을의 고용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총2회(2013.9.10., 2014.9.10.)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월1회 방문하여 급식식단을 작성하고 매월 25일 전에 식단표를 보내는 방식으로 위탁운영</p> <p>「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p>	<p>○ 경고 - 설립자 ○○○ - 원장 ○○○</p> <p>○ 시정</p>
<p>7. 직원(조리사) 퇴직급여제도 미 설정</p>	<p>○ 2015년 7월 감사일 현재 직원인 조리사에 대하여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의 50%를 공제하거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음</p> <p>「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및 제25조</p>	<p>○ 시정</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8. 설립자의 회계 권한 침해 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자가 2014.12.1.원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에 면직 보고를 함으로써 원장의 직을 면함으로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에 따른 원장이 가지는 회계사무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주요 계약 및 업체 선정 등 회계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함. ○ 유치원 설립자가 자신의 급여 및 판공비 73,749,370원과 사학연금 직장부담금 4,067,160원, 원장 병원비 병원비 8,602,210원을 부당 지출하였고, 자녀가 설립자로 있는 ○○어학원으로 물품 1,463,400원을 부당전용하는 등 총 87,882,140원의 횡령 및 배임을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원장 ○○○ ○ 보전 - 87,882,140원 【사법기관】 ○ 고발 - 설립자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
[7] 총신유치원		
1. 교육과정에 바깥놀이 기준시간 미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학년도 교육과정(누리과정)에 바깥놀이 시간을 만5세에 대해 1일 1시간(60분)에 미달하는 평균 35분(3월 31분, 4월 36분, 5월 35분, 6월 39분)을 운영함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서울특별시 교육청 고시 제2014-5호, 2014.2.28.) 및 「2015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201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2.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장기적립식 연금보험 가입 및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재정플랜연금보험(적립형)'에 10년 납입으로 가입(2012.4.12.~2022.3.12. 계약자:○○유치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유치원)한 후 2015.5.31.현재 유치원회계에서 매월 1,480,000원 씩 계 107,940,000원을 적립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및 「사립학교 예산 및 결산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원장 ○○○ ○ 보전 -107,940,000원
[8] 강동유정유치원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1.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 2013~2014회계연도에 1천 5백만원이상 공사 4건 금 165,400,000원을 계약·집행하면서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집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35조,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기관경고 【사법기관】 ○ 고발 - 무면허업체에 대하여 건설 산업 기본 법 위반 혐의로 고발
2.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차량 번호 〇〇〇〇의 자동차 보험료 1,566,890을 경기도 〇〇〇〇〇유치원(설립자 〇〇〇 동일함)회계에서 2014.7.31. 집행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 통보
3. 세입·세출 예산 편성 부적정(공적이 용료 부당 편성)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운영비 과목에 건 물 노후시 개보수와 설립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적이용료 180,000,000원 (15,000,000원×12월)을 편성함(지출금액은 없음) 「사립학교법」 제33조와 제51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칙」 제5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및 「사학기관 재 무·회계 규칙」 제21조	○ 시정
4. 유치원회계 자금 집행 부적정	○ 2015. 2. 23. 2014년도 유치원회계에서 121,500,000원 (지출결의서, LED 전기공사를 위한 예치금)을 인출 하여 설립자가 보관 중 126일이 지난 2015. 6. 29. 2015학년도 위 유치원회계에 같은 금액을 입금함 그리고 〇〇보육사로부터 수입교재교구 마을그림카 펫 외 40종을 구입 명목으로 2015. 2. 27. 2014학년 도 유치원회계에서 200,000,000원(지출결의서, 보육 사 신학기물품 적립)을 인출하여 동 업체 대표 〇 〇〇에게 지급한 후, 동 업체가 본사 수입 물량 한 정으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자 25일이 지난 2015. 3. 24. 이를 반납받아 위 유치원회계에 같은 금액을 다시 입금함. 또한 2015.4.6. 2014학년도 유치원회계에서 14,424,299원을 해지하여 설립자가 보관 중 84일이	○ 경고 - 설립자 〇〇〇 - 원장 〇〇〇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지난 2015. 6. 29.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에 같은 금액을 입금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p>	
5. 주차장 사용료 지출 부적정	<p>○ 2014.2.28. 2013학년도 유치원회계에서 12개월 주차장임대료를 정산하면서 매월 10,000,000원씩 총 120,000,000원을 공동운영비 목에서 지출하였고, 2014.2.20. ○○구 ○○동 ○○번지 소재 주차장 1,463㎡을 임대차계약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부가세 1,381,818원을 포함하여 15,200,000원씩 총 197,600,000원을 일반운영비 목에서 지출하였으며, 임대인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5. 12.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p>	<p>○ 경고</p> <p>- 설립자 ○○○</p> <p>- 원장 ○○○</p>
6. 유치원회계에서 설립자 부담액 상환 부적정	<p>○ 설립자가 2013. 3월 개원 전인 2012. 5~6월 공사한 수영장 시설공사비 중 90,000,000원을 개원 후인 2014. 1.~2. 유치원회계에서 지급</p> <p>「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p>	<p>○ 경고</p> <p>- 설립자 ○○○</p> <p>○ 보전</p> <p>- 90,000,000원</p>
7. 계약 업무 소홀	<p>○ ‘염소발생기 제작설치’의 9건을 계약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견적서를 1인에게만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p>	○ 기관경고
8. 회계 집행·관리 부적정	<p>○ 2014.3.1.부터 2015. 5월말까지 거래업체에 대가 지급 시 방과후교재 구입 등 총 55건(총 517,204,934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음. 또한 2014.2.28.부터 2015. 5월말까지 거래업체에 대가 지급 시 현장학습 관광버스 대여비 등 총 46건(총 682,220,000원)의 대가 지급 시 금융기관(무통장 입금)을 통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함</p>	<p>○ 경고</p> <p>- 원장 ○○○</p> <p>【국세청】</p> <p>○통보</p> <p>- 세금계산서 미징구 내역 등을 과세업무에 활용</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53조	
[9] 유정유치원		
1.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p>○ 2015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13시부터 14시까지 다문화영어, 오르프(다양한 악기), 체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수요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14시 30분부터 15시 10분까지 학부모들이 선택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85명의 유아들에게 1인당 1일 2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p> <p>「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2015),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p>	○ 시정
2.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p>○ 2013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7차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형식으로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에는 참석자 명단 및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p> <p>「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동법 제19조의4</p>	○ 시정
3. 유치원회계 자금집행 부적정	<p>○ ○○보육사로부터 수입교재교구 구입 명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2014.12.31.~2015.2.23. 기간 중 4건으로 나누어 121,500,000원(지출결의서, 교구 주문)을 인출하여, 동 업체 대표에게 지급 후, 동 업체가 본사 수입 물량 한정으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자 이를 반납받아 2015.6.29. 유치원회계에 같은 금액을 입금함.</p> <p>그리고 동 업체로부터 수입교재교구 구입 명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2015. 2. 27. 7건으로 나누어 108,700,000원(지출결의서, 교구 주문)을 인출하여 동 업체 대표에게 지급한 후, 동 업체가 본사 수입 물량 한정으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자 이</p>	<p>○ 경고</p> <p>- 설립자 ○○○</p> <p>- 원장 ○○○</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를 반납받아 2015. 3. 24. 7건으로 나누어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에 같은 금액을 입금함.</p> <p>2015.4.6. 2014학년도 유치원회계에서 13,977,006원을 해지하여 설립자가 보관 중 84일이 지난 2015.6.29.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에 출금한 금액보다 447,293원 많은 14,424,299원을 입금함</p> <p>「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p>	
4. 회계 관련 증빙서류 보존·관리 부적정	<p>○ 2012회계연도의 지출증빙서, 통장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및 장부 일체를 보존·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음</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 및 제53조의2</p>	○ 경고 - 원장 ○○○
5. 세입·세출 예산 편성 부적정(공적이용료 부당 편성)	<p>○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운영비 과목 중 일반운영비목에 건물 노후시 개보수와 설립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적이용료 84,000,000원(7,000,000원×12월)을 편성함(지출금액은 없음)</p> <p>「사립학교법」 제33조와 제51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p>	○ 시정
6. 통학차량 구매업무 부적정	<p>○ 2015.2.21. 통학차량 구입을 위하여 53,150,000원을 ○○자동차 대리점에 선 입금하였으나 차량 공급 부족을 이유로 감사일까지 차량이 납품(감사직후 납품)되지 않고 있으며,</p> <p>2014.12.2. 구입한 어린이통학차량 차량번호 ○○○○의 부대비용(등록,취득세 등) 금2,939,38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지 않고 아직 미 납품된 어린이통학차량 구입비용에서 추후 상계처리하기로 구두 결정하고 ○○자동차 대리점에서 처리</p> <p>「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p>	○ 경고 - 설립자 ○○○ - 원장 ○○○
7. 유아 야외활동(체험학습) 실시 부적정	<p>○ 2013~2015학년도 야외활동(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건축물 승인은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설립자 소유의 ○○ 어린이생활관(경기도 ○○군 소재)에서 생활관체험, 여름체험학습, 김장체험,</p>	○ 경고 - 원장 ○○○ - 설립자 ○○○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숲체험 등 활동(기간 중 26회)을 실시하고 총 65,356,320원을 설립자에게 지급함	
8.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부적정	<p>○ 2013~2014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인 교통비, 현장학습비, 재료비, 방과후특성화, 학교급식비, 방과후과정 등을 징수한 후 혼합하여 집행하고 사업이 종료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여 학부모에게 반납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집행 잔액(2013학년도 총 26,907,001원, 2014학년도 총 16,953,820원)을 당해연도 유치원 운영비 등으로 집행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2조 및 제33조</p>	○ 주의 - 원장 ○○○
9. 계약업무 소홀	<p>○ ‘수업재료 구입’ 등 총 17건을 계약하면서 추정 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견적서를 1인에게만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2월 한 달 동안 문구 등을 구입하면서 총 금액이 추정 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각각의 건으로 나누어 견적서를 1인에게만 받아 수의계약을 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p>	○ 기관경고
10.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 관련 합계표 미제출 등	<p>○ 2014.3.1.부터 2015. 5월말까지 거래업체에 대가 지급 시 식자재 구입 등 총 38건(총 244,254,468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을 하였으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음. 또한 2014.2.28.부터 2015.5월말까지 거래업체에 수업재료 구입 등 총 41건(총 892,997,006원)의 대가 지급 시 무통장 입금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함</p> <p>「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53조</p>	<p>○ 경고 - 원장 ○○○</p> <p>【국세청】</p> <p>○통보 - 세금계산서 미징구 내역 등을 과세업무에 활용</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11. 어린이 놀이시설 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등	<p>○ 2014.12.12. ○○건축사사무소와 금 30,140천원에 ‘놀이터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가 있는 주식회사○○○○산업이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공사 완공(2015.3.30.) 전인 2014.12.20.과 2015.3.3.에 각각 16,500천원, 13,640천원을 ○○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하였으며, 실제 설치된 놀이시설 개수보다 과다하게 대금 청구되었음에도 전액 지급함</p> <p>「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6조·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및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p>	<p>○ 기관경고</p> <p>【사법기관】</p> <p>○ 고발</p> <p>- 무면허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p>
[10] 건영유치원		
1. 유치원 관리실 사용 용도 미준수	<p>○ ‘교사숙소 및 관리실’은 지방에 거주하는 교사들이 사용하도록 함. 이후 교사 숙소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24시간 유치원 관리가 필요하자 1991년부터 2015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실장에게 24시간 유치원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교사숙소 및 관리실’을 사용하도록 함. 관리실장은 24시간 유치원 관리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밖에 없었고 대신 별도의 야간관리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유치원 건물에 유치원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초 인가된 ‘교사숙소 및 관리실’의 용도를 준수하지 아니함.</p> <p>「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p>	○ 기관경고
2. 유치원 시설 무단 용도 변경	<p>○ 2008년에 조리실이 본관 지하 1층으로 이전하는 등 내부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위 유치원은 관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2001.3.20. 인가받은 시설 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청하고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5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p> <p>「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p>	○ 기관경고
3. 특성화교육 활동비 목적 외 사용	<p>○ 원아들로부터 수익자부담경비로 특성화교육활동비를 집행하면서 이 중 일부는 수익자부담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사비, 상해 원아 합의금, 교직원</p>	<p>○ 주의</p> <p>- 원장 ○○○</p> <p>○ 보전</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근로소득세 등 목적 외로 금211,869,860원을 집행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 5,823,220원
4.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 교직원의 4대 보험 개인부담금, 세금 등을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현금출납부 등 관리하는 장부를 구비하지 않은 채, 2012년도부터 2015. 8. 5. 감사일 현재까지 ○○○○○, ○○, ○○○○○○로부터 44,567,600원을 받아 보관하였으며, 입출금 내역 없이 현금을 입·출금하였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간주하여 유치원회계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았으며, 위 임대료는 설립자부담금으로 간주하여 유치원회계로 이체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함	○ 주의 - 원장 ○○○
5. 회계 집행·관리 부적정	○ 2012~2015회계년도 기간동안 운영비 및 식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회당 현금인출 한도액(1백만원)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92회에 걸쳐 이를 초과하여 총 162,000,000원을 인출, 현금으로 직접 집행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33조, 제53조	○ 경고 - 원장 ○○○
6. 시설공사 업무 소홀(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단일견적 처리)	○ ‘계단난간공사’등 총 5건을 계약하면서 해당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견적서를 1인에게만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기관경고
7.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 공사에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2012. 10. 29. ○○○과 계약한(계약금액 39,000천 원) 현관 자동문 공사 외 5건’의 전문공사를 시행하면서 전문공사 사업 면허를 등록하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집행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및 별표1	○ 기관경고 【사법기관】 ○ 고발 - 무면허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8. 경조비 과다 집행	○ 2012. 5. 20. 당시 설립자이자 유치원 원장이 사망하자 임시원장이 유족에게 조의금으로 4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경조비를 과다 집행함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 보전 - 4,450,000원
[11] 서초유치원		
1. 특기·적성비를 유치원회계에 미편입	○ 2013학년도부터 2015. 8. 13. 감사일 현재까지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면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학부모로부터 수익자부담경비로 특기·적성비를 받았고, 이를 유치원회계에 편입하지 않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사립학교 학교회계 2015학년도 예산 및 2014학년도 결산지침」	○ 시정
2. 세금계산서 (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 관련 합계표 미제출	○ 2014.3.1.부터 2015. 5월말까지 거래업체에 대가 지급 시 ○○영어 교재 구입 등 총12건(44,358,27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거래명세서 혹은 기타영수증을 근거로 지급하였으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	【국세청】 ○통보 - 세금계산서 미징구 내역 등을 과세업무에 활용
3. 옥상 풋살장 공사 도급자 선정 오류	○ 2014. 5. 15. 전문건설업종 면허가 없는 ○○○○조경와 금 15,085,180원에 ‘옥상 풋살장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사 중 약 32퍼센트에 해당하는 구조물공사를 전문건설업 면허(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가 있는 (유)○○이 시공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6조·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및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기관경고 【사법기관】 ○ 고발 - 무면허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
4. 대금 지급 시 정당 채주와 입금자명 불일치	○ 식재비 및 지출을 하면서 ○○농장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농장에 수목을 제공한 ○○조경으로부터 계산서를 제출받아 서류를 구비한 후 ○○○에게 대금을 입금하였고, 오르다M블럭 구입비 지출을 하면서 ○○○교육에게 지급하여야 할	○ 주의 - 원장 ○○○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대금을 부부관계이며 동시에 부사장으로 재직 및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에게 지급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 원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p>	
[12] 솔샘유치원		
1. 건물 증·개축 및 전면 보수 명목으로 장기적립식 연금보험 등 가입 및 보험료 납입	<p>○ 건물 증·개축 및 전면 보수 명목으로 2012학년도 부터 2015년 8월 감사일 현재 유치원회계에서 피보험자를 원장 또는 원장의 배우자 명의로 ○○○생명보험주식회사 연금보험 1건과 ○○생명보험주식회사 저축보험 2건을 가입하고, 월 8,255,000원씩 총 납입액 169,370,000원을 적립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고등교육법」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p>	<p>○ 경고 - 원장 ○○○</p> <p>○ 보전 - 68,900,000원</p>
2. 퇴직급여 총당금 계좌에서 원장 배우자 연금보험료 납입	<p>○ 2013. 11. 26.에 ○○유치원을 계약자로 하여 원장 배우자 명의로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2013. 11. 26. 부터 2015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21개월간 유치원회계의 교직원 퇴직급여 총당금 계좌에서 원장 배우자 ○○○의 연금보험료 월 1,500,000원씩 총 31,500,000원을 납입함(현재 해지하여 세입 조치)</p> <p>「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p>	○ 통보
3. 회계 관련 증빙서류 보존·관리 부적정	<p>○ 2012학년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관리하면서 세금 계산서·계산서 등의 청구서와 견적서,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입증하는 무통장입금증 및 공사관련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전문면허증·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설계서·견적서 등)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대부분을 보존·관리하고 있지 않음</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 및 제53조의2</p>	○ 경고 - 원장 ○○○
4. 어린이통학 버스 미신고 차량 및 지입차량 운행	<p>○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일부를 지입차량으로 운행하였고, 1대는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았고 5대는 2015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신고하여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로서 특</p>	○ 시정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별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p>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 51조, 제52조</p>	
5. 교직원 단체보험료 부당 납부	<p>○ 2013. 12. 26. ○○○생명보험주식회사에 교직원 32명에 대하여 단체보험(무배당 ○○○기업 New-Plan 보험 100% 환급형)을 가입하여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운영비에서 월 보험료 3,717,400원씩 20개월간 74,348,000원을 납입하였는데, 이 중 현재 ○○유치원 재직 교직원은 11명이고, 1명은 ○○○유치원 원장이며, 20명은 이미 퇴직한 사실이 있음</p> <p>「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p>	<p>○ 경고 - 원장 ○○○</p> <p>○ 보전 - 74,348,000원</p>
6. 통학버스 기사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부적정	<p>○ 2013.11.1.자로 2013.3~10월 통학버스 기사 ○○○ 등 7명의 퇴직금 적립을 위해 퇴직금 적립 통장이 아닌 설립자 소유 ○○○유치원으로 11,184,000원을 이체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p>	<p>○ 경고 - 원장 ○○○</p> <p>○ 보전 - 11,184,000원</p>
7. 계약업무 소홀	<p>○ ‘교재구입’ 5건을 계약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견적서를 1인에게만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p>	<p>○ 주의 - 원장 ○○○</p>
8.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관련 합계표 미제출 등	<p>○ 2014.3.1.부터 2015.5월말까지 거래업체에 대가 지급 시 버스임차료 등 총 41건(총 178,757,97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을 하였으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음</p> <p>「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p>	<p>【국세청】</p> <p>○통보 - 세금계산서 미징구 내역 등을 과세업무에 활용</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9. 예산 목적외 사용	○ 2013~2015회계년도에 스파(짬질방) 이용료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수령하는 등 총 51건에 걸쳐 금 2,041,610원을 예산 목적 외로 사용	○ 경고 - 원장 ○○○ ○ 보전 - 2,041,610원
10. 유치원회계 공금 횡령	○ 기부금 명목으로 횡령 2014. 5. 27. '○○○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결의하고, 유치원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유치원명의로 "서울시교육감○○○후원회"에 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 ○ 시설공사비 명목 횡령 - 2014. 2. 27. 시설공사비 55,000,000원을 지출하면서 정확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 이사의 개인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 ○○○은 2014년 3월 경 원장 배우자가 '○○○' 명의 금융계좌를 알려주며 실제 공사비 1천만원을 제외한 45,000,000원을 돌려달라 하여, 3차례에 걸쳐 요청액 전액 반환 - 2013. 11. 28. 시설공사비 22,000,000원 지출하면서 유치원회계에서 '○○○' 개인계좌(은행 및 계좌번호 미상)로 2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원장은 위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 회계질서 문란(허위견적 첨부 후 부외계좌 송금) 2015. 2. 28. 위 유치원 회계에서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견적 첨부 후 총39,860,000원을 부외계좌로 부당하게 지출하였고, 관할청인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에는 2015년도에 보고한 '2014학년도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2015학년도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숨기고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위 유치원회계 질서를 문란케 함 「형법」 제356조	○ 중징계요구 - 원장 ○○○ ○ 보전 - 67,500,000원 【사법기관】 ○ 고발 - 원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

시립유치원 자원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2016.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개요

- 가. 감사목적 :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나. 감사대상 : 6개 공사립유치원(공립1, 사립법인1, 사립개인4)
- 다. 감사기간 : 2016.10.13.~2016.11.21.(감사단장 ○○○외 4명)

2. 주요 지적사항

구 분	내 용
Ⅰ 제도개선 「만기환급형보험 해소 및 관리 방안」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이 「<u>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u>」 제21조(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준수하지 않고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변칙 적립(목적외 사용)이 확인함. ○ 전체 679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현황 전수조사 결과, 40%내외 유치원에서 다양한 만기환급형보험(수익형보험 포함)에 가입, 변칙적립(12,398,399,531원)이 확인됨. ○ 위와 같은 변칙 적립(목적외 사용)은 ① 정부의 <u>누리과정지원비</u>를 비효율적으로 사장시키고,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② 보험 기간이 장기(5년~20년, 종신 등)로 만기 시 유치원 회계로의 세입 조치의 불확실 등 <u>회계사고</u>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의 해소를 위해 “<u>사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u>”을 마련하여 유치원 보험 가입·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이미 가입된 만기환급형보험을 해소하기 계약 해지, 보험 환급금 세입처리, 보험해지 특례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였음. ○ 금회 확인된 유치원의 변칙 적립액 12,398,399,531원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위 보험관리

구 분	내 용
	기준을 소관부서(유아교육과)에 제도개선 통보하여, 앞으로 만기환급형 보험의 편법 적립의 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② 통보 「회계법령 위반하여 편성된 예산 시정 지도 요구」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에 따르면 유치원 ³⁾ 은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관할청은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감사에서 회계법령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지적됨. ○ 이는 사립유치원에서 관할청이 제출된 예산서에 대하여 별도 시정조치가 없어 위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를 인정한다고 오판(誤判)하는 바, 사업부서(유아교육과)에 이를 통보하여 관할청이 예산서가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될 때 이를 지도하도록 함
③ 권고 수익자부담급식비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반영	○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수익자부담경비인 원아 급식비를 정액으로 징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사립유치원에서의 올바른 급식비 운영 방안을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반영토록 권고함

2)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보고

- 국무조정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1제도개선 「만기환급형보험 해소 및 관리 방안」 ”을 16개 시도교육청 파급 추진

3) [유치원 현황]

시도	유치원수			학 급 수			원 아 수			교원수	비고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서울	202	677	879	749	3,334	4,083	15,472	75,204	90,676	5,127	

[사립유치원 주요 예산지원 현황]

- 누리과정 지원 243,720,475천원

* 사립 2016년 학생1인당 사립유치원 지원액 월29만원(교육과정비 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 공립 2016년 학생1인당 공립유치원 지원액 월11만원(교육과정비 6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3.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1] 서울청계숲유치원		
1. 우유 급식예산 낭비	○ 국내외현장체험학습, 장기입원 등으로 원아들이 등원하지 아니한 경우 급식 우유 납품업체에 변동 인원을 통보하여 필요한 개수만큼 우유를 공급받아야 함에[도, 2015. 3. 1. ~ 2016. 9. 30. 기간동안 우유 90개를 불필요하게 공급받아 유아학비 예산 34,200원(380원×90개)을 낭비함 「학교급식 기본방향-Ⅲ.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시정
2.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규정 미준수	○ 학교장이 연 4회 분기별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2015학년부터 2016학년 10.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관련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시정
3. 유아학비 업무 처리 소홀	○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음. 2016년 5월 원아 1명이 집안사정으로 등원하지 못하여 3일만 출석하여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인데도 위 시스템의 출결 입력자인 담임교사는 ‘교육과정출결관리’란에 결시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여 관할청으로 부터 유아학비 60,000원 전액을 교부받은 바, 이는 유아학비 54,200원을 과다하게 수령 받은 것임 「2016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시정(회수) - 54,200원
4.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소홀	○ 조합놀이대 관리주체인 유치원은 최초 설치한 2015. 2. 16.부터 2016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검사번호, 시설명, 시설 소재지, 관리주체,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 및 안전수칙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 이용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체계 확보에 소홀히 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0조	○시정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2] 종신대유지원		
1. 수익자부담 교육비 미반환	<p>○ 수익자부담교육비는 교육비를 부담하는 부담자에게 그 혜택이 그대로 부여되도록 운영징수·수납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이를 정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p> <p>2014학년도에 수익자부담교육비(급식비, 교재비, 차량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특성화활동비) 집행 잔액 총93,615,443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유치원회계통장에 보관</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p>	<p>○ 시정(환불) - 93,615,443원</p> <p>○ 경고 - 원장</p>
2. 유치원 급식비에 관한 사항	<p>○ 원아가 실제로 급식을 실시한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당 급식비를 매달 66,000원 정액으로 징수함</p> <p>「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매뉴얼(서울시교육청)</p>	○ 시정
3.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과다 수령	<p>○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결석으로 인해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음. 2016년 2월 방과후과정 원아 1명이 개인사정으로 7일만 출석하였으나 시스템의 출결 입력자인 담당교사가 결시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14일 출석으로 처리되어 관할청로부터 유아학비 33,790원을 교부받은 바, 이는 유아학비 16,900원을 과다하게 수령받은 것임</p> <p>「2016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p>	○ 시정(회수) - 16,900원
4. 교원 인건비 지원금 수급 부적정	<p>○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담임교사에게는 월510,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대상자가 휴직, 면직, 담임 변경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p> <p>그런데 2013학년도 담임 교사가 2014학년도에 학급을 맡지 않는 것으로 신분 변동되었음에도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아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처우개선비 및 담임수당 등 총1,530,000원을 수령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p>	<p>○ 시정(회수) - 1,530,000원</p> <p>○ 주의 - 원장, 원감</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3] 숲유치원		
1. 세입·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공적이용료 부당 편성)	<p>○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설립자에게 사유 재산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비 과목 중 공통운영비목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5,000,000원(1,000,000원×5월)을 편성함(집행은 하지 아니함)</p> <p>「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제21조</p>	○ 시정
2. 예산 목적외 과다지출(만기 환급형보험 가입 및 지출)	<p>○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과-1177, 2013.9.30.)에서는 만기환급형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보장보험료에 의해서만 보상이 결정되고 나머지는 단순 정기적금 성격으로 목적외 과다지출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치원에서는 '재산종합보험'에 15년(2012~2022년) 납기로 가입, 유치원회계에서 매월 1,500,000원 씩 56회에 걸쳐 총84,000,000원을 납입·적립함. 월납액 1,500,000원 중 보장보험료인 169,461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0,539원은 보상에 반영되지 않는 단순 정기적금으로 총 74,510,184원(1,330,539원×56회)을 목적 외 과다지출한 것임</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p>	<p>○ 시정(보전) - 74,510,184원</p> <p>○ 경 고 - 설립자</p> <p>○ 주 의 - 원 장</p>
3. 방화관리자 수당 과오지급	<p>○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라 행정실장에게 지급하였던 방화관리자수당을 그 직을 면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600,000원의 방화관리자수당을 과오 지급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p>	<p>○ 시정(보전) - 6,600,000원</p> <p>○ 주의 - 원장</p>
4. 유치원 급식비에 관한 사항	<p>○ 원아가 실제로 급식을 실시한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당 급식비를 매달 66,000원 정액으로 징수함</p> <p>「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매뉴얼(서울시교육청)</p>	○ 시정
5.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미실시	<p>○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결산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방법, 급식에</p>	○ 시정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p>관한 사항, 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음</p> <p>「유아교육법」 제19조의4</p>	
6. 차량구입을 위한 적립금 운용	<p>○ 원아 통학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5. 12. 23.부터 2016. 10. 감사일 현재까지 같이 총 40,000,000원을 별도 적립함</p>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p>	○시정(보전) - 40,000,000원
7. 교원 인건비 지원금 수급 부적정	<p>○ 유치원 방과후과정반(종일반) 담임 인건비 지원 기준은 학급당 유아 수 및 전체 유아 수를 고려하여 유아 20명 당 교사 1명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방과후과정반(종일반) 6학급을 운영하면서 담임 인건비 지원 기준이 되는 매월 1일자 총 유아 수가 120명이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원아 수가 120명 미만으로 5개 학급 담임교사만 인건비 지원이 해당됨에도 6개 학급 담임교사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을 신청, 교사 1인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 및 인건비 총 2,550,000원을 부적정하게 수급함</p> <p>「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사립유치원 재정 업무 매뉴얼」 (서울시교육청)</p>	○ 시정(회수) - 2,550,000원 ○ 주의 - 원장
8. 급식운영 관련 소홀(영양사 배치 등)	<p>○ 영양사는 식단의 작성 및 검식(檢食)·배식, 구매 식품의 검수(檢受),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음</p> <p>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영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양사에게 식단작성과 영양·(안전)위생지도만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근무시간도 연 1~2회 출근하는 것으로 계약함. 이에 따라 원장이 영양·위생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 사항은 연 1회 영양사의 출근 시 지도를 받아 급식을 운영하는 등 급식 관리에 적정을 다하지 못함</p> <p>「식품위생법」 52조(영양사)</p>	○ 시정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4] 동성유치원		
1. 설립자 개인 명의로 적립금 부당 적립	<p>○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로 2016. 6. 25.부터 2016. 11. 감사일 현재까지 총 110,194,190원을 적립하는 등 설립자 명의로 적립금 2건 총118,978,387원을 부당하게 적립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p>	<p>○ 시정(보전) - 118,978,387원</p> <p>○ 경고 - 설립자</p>
2. 세금계산서 (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 관련 합계표 미제출	<p>○ 2014. 3. 1.부터 2016. 10월말까지 거래업체에 대가 지급 시 교직원 의상비 등 11건(총 69,466,5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 하였으며, 그 결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이를 누락함.</p> <p>「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p>	<p>【국세청】</p> <p>○통보 - 과세자료 통보</p>
3. 유아급식비에 관한 사항	<p>○ 원아가 실제로 급식을 실시한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당 급식비를 매달 70,000원 정액으로 징수함</p> <p>「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매뉴얼(서울시교육청)</p>	<p>○ 시정</p>
4. 급식운영 관리 소홀	<p>○ 유치원 급식을 운영하면서, 영양사가 위 직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는 급식 운영 일지(검식·보존식, 위생 및 안전 일일 점검),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 등의 점검자 및 책임자란에 소속 영양사인 ○○ ○의 확인 서명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고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한 내역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급식운영 관리를 소홀히 함.</p> <p>「유아교육법」 제17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52조</p>	<p>○ 시정</p>
5. 회계 증빙서류 보존 관리 소홀	<p>○ 2014학년도 부터 2016학년도 까지 지출된 총 37지건(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청구서와 견적서, 공사관련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전문면허증·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설계서 등)가 누락되어 있는 등 등 회계 관련 증빙서류 보존·관리에 소홀</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제53조, 제53조의 2</p>	<p>○ 시정</p> <p>○ 경고 - 원 장</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6. 교원 인건비 지원금 수급 부적정	○ 교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립교원의 연봉액보다 적게 보수를 받는 원장·원감에게는 처우개선비 월 400,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원장 외 1명은 연간보수총액이 공무원 연봉액을 초과하여 교원 인건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나 처우개선비를 신청, 총 9,600,000원(40만원×12개월×2명)을 부적정하게 수급함. 「유아교육법」 제26조,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 지원계획(서울시교육청)	○ 시정(회수) - 9,600,000원 ○ 경고 - 원장, 원감
7.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부적정	○ 2013.3.1.자 영양사를 고용한 이후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소득 금81,4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제13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 시정
8. 교직원 4대보험 가입 소홀	○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4대 보험 가입대상인 보조교사 14명에 대하여 가입 신고를 하지 아니함. 「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 시정
[5] 나래유치원		
1. 세입·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공적이용료 부당 편성)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비 과목 중 공동운영비목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24,000,000원(2,000,000원×12월) 편성함(8,000,000원을 집행하였다 감사실시 전 반환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제21조	○ 시정
2. 시설적립금 임의 적립	○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2016. 5. 2.부터 2016. 11. 감사일 현재까지 설립자 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2,500,000원씩 7회에 걸쳐 총 17,500,000원을 적립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 시정(보전) - 17,500,000원 ○ 주의 - 설립자
3. 세금계산서 (계산서) 미수취 및	○ 2014. 4. 1.부터 2016.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거래업체에 대가 지급 시 식자재 구입비 등 65건(총 186,970,49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국세청】 ○ 통보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과세 관련 합계표 미신고	수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	- 과세자료 통보
4. 유아 급식비에 관련 사항	○ 원아가 실제로 급식을 실시한 일수만큼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당 급식비를 매달 60,000원 정액으로 징수함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매뉴얼(서울시교육청)	○ 시정
5. 영양사 근무사항 관리 소홀	○ 「식품위생법」에 따른 구매식품의 검수, 급식운영 일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달 1회 급식소 자체위생 지도·점검표만을 작성하고 있어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건 경로 파악 및 안전대응이 지연될 소지가 있는 등 급식운영 관리를 소홀히 함. 「식품위생법」 52조	○ 시정
6. 어린이통학버 스 지입차량 운행 등	○ 2016.3.2.부터 통학버스 1대를 지입차량으로 계약 운영함. 또한 이 지입차량을 관할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통학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로서 특별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2016. 10. 25. 통학버스 신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제52조	○ 시정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자격 업체와 거래	○ 유치원이 집단급식소임에도 불구하고 2014.3.부터 2016.9.까지 급식 식재료(공산품, 농수산물)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도소매 업종만으로 영업을 하는 무자격업체에서 구매하여 급식을 운영하였고, 위 구매 총47건의 대금 187,915,940원을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인 공산품과 비과세 대상인 농수산물의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음. 「식품위생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4조	【국세청】 ○ 업체 통보 - 세금 탈루 【사법기관】 ○ 업체 고발 - 무자격 공동 급식소 납품 ○ 경고 - 원장, 설립자
8.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부적정	○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원천징수 대상자인 7명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제13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 시정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6] 아이디유치원	
1.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공적이용료 편성)	○ 2015,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편성하고, 16회에 걸쳐 설립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총26,100,000원을 지출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제21조	○ 시정(보전) - 26,100,000원 ○ 경고 - 설립자,원장
2. 예산 목적외 과다지출(만기환급형보험 가입·적립)	○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과-1177, 2013.9.30.)에서는 만기환급형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보장보험료에 의해서만 보상이 결정되고 나머지는 단순 정기적금 성격으로 목적 외 과다지출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설립자 명의로 만기환급형보험에 5년(2013~2018) 납입으로 가입(계약자 : 설립자, 만기수익자 : 계약자, 사망시 : 법정 상속인)한 후, 매월 1,500,000원씩 43회에 걸쳐 총 64,500,000원을 납입·적립함. 월납액 1,500,000원 중 보장보험료인 89,223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0,777원은 보상에 반영되지 않는 단순 정기적금으로 총 60,663,441원 (1,410,777원×43회)을 목적 외 과다 지출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 시정(보전) - 60,663,441원 ○ 경고 - 설립자,원장
3. 예산 목적외 집행(저축보험 가입·적립)	○ 유치원에서는 '무배당 저축보험'(★★생명보험주식회사)에 12년(2015. 9.~2027. 9.) 납입으로 가입(계약자 : 원장, 만기수익자 : 유치원, 사망시 : 법정상속인) 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매월 990,000원씩 14회에 걸쳐 총 13,860,000원을 납입·적립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 시정(보전) - 13,860,000원 ○ 경고 - 원장
4. 예산 목적외 집행 및 만기환급금 세입 처리 부적정(연금보험)	○ 원장이 '무배당 ○○○○연금보험'에 10년(2011. 3.~2021. 2.) 납입으로 가입(계약자 : 원장, 만기수익자 : 원장, 사망시 : 법정상속인) 한 후, 유치원 회계에서 매월 2,985,000원 씩 54회에 걸쳐 총 161,190,000원을 납입하였다.(2015.8. 중도 계약 해지)	○ 경고 - 원장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p>○ 위 유치원에서는 중도 계약해지 후인 2015. 10. 8. 환급받은 나머지 금액 93,280,000원은 원장 개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위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직전인 2016.11.13. 유치원 회계에 세입 조치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p>	
5. 예산 목적 외 사용(후원금 지출)	<p>○ 2014 ~ 2016 회계년도에 유치원회계에서 유니세프 후원금 등 64건, 금1,600,000원을 예산 목적외로 사용함</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p>	○ 시정(보전) - 1,600,000원
6. 급식운영 관리 소홀(영양사 배치 등)	<p>○ 영양사는 「식품위생법」 52조의 영양사 직무인 1.식단의 작성 및 검식(檢食)·배식 2.구매식품의 검수(檢受) 3.급식시설의 위생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 4.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을 하여야 함에도 1.식단작성의 직무만 수행하고 유치원에 연 1회 방문하여 조리사가 작성한 “급식운영일지”를 일괄결재하는 등 급식운영 관리를 소홀히 함.</p> <p>「식품위생법」 52조</p>	○ 시정